



인도네시아 세무 안내

SABH 및 OSS를 통한 세금 등록 번호의 전자 등록

납세의무자 등록번호의 전자적 등록에 관한 재경부장관령 (“MoF”) No. 71/PMK.03/2018 (“MoF-71”)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행정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인 납세자의 납세번호 등록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고 담당 공증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9월10일에 국세청장은 PER-20/PJ/2018 (“PER-20”)를 발행하였습니다. MoF-71은 SABH¹와 OSS²를 통해 납세의무자 등록번호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을 전자적으로 (온라인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PER-20 규정은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SABH를 통해 납세의무자 등록 번호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공증인을 통하여 업무가 처리되어야하며 OSS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후 필요한 증빙 서류는 30일 이내에 관련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 세무서는 온라인 등록후 1 영업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등록 번호를 발급/제공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증빙 서류의 제출에 대한 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가

이번호:

1. [SABH 및 OSS를 통한 세금 등록 번호의 전자 등록](#)
2. [보세 구역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
3. [Valuation 관련](#)
4. [소포 수입에 관한 조항](#)
5. [세관 신고](#)
6. [소비재 상품의 비축, 수입, 수출 및 운송 절차](#)
7. [수입자 식별 번호](#)

¹ Legal Entity Administration System, hereinafter abbreviated as SABH, is an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company held by the Directorate General of General Legal Administration.

² Electronic Integrated Business Licensing or Online Single Submission, hereinafter abbreviated as OSS, is Business Licensing issued by OSS Institutions for and on behalf of ministers, heads of institutions, governors or regents / mayors to business actors through integrated electronic systems.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납세의무자 번호가 실효되도록 (Wajib Pajak Non Efektif) 처리할 수 있습니다.

DGT 온라인(ereg.pajak.go.id)을 통한 전자 등록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을 통하는 현재의 방법으로도 납세의무자 등록 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PER-20은 2018년9월10일부터 유효 된다.

관세 Focus

보세 구역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

재경부장관은 보세 구역에 관한 No. 131/PMK.04/2018 ("PMK-131") 규정을 발행하였습니다. PMK-131은 120호 재경부장관령과 (No.120/PMK.04/2013 ("PMK-120"))과 이전 147호 장관령을(No. 147/PMK.04/2011("PMK-147"))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PMK-131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MK-131에 의거 보세 구역 면허를 취득하려면 Online Single Submission ("OSS") 시스템과 통합된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INSW")의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PMK-147은 관할 세관장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이전 PMK-147 규정은 보세 구역의 위치가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PMK-131에서는 생산으로 인해 원료 및/또는 재화를 비축 할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공간에 대하여도 보세구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전 PMK-147 규정은 보세 구역 허가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이 가공되거나 조립될 장소에 수입된 수입품이나 반입된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이와 달리 PMK-131은 보세 구역 허가가 다음과 같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직접 또는 간접 수출 목적;
 - b. 수입 대체품;
 - c. 하위 사업을 지원 목적; 및/또는
 - d. 항공, 해운, 철도 및/ 또는 방위 및 보안 사업같은 특정사업을 위하여 가능
4. PMK-131은 보세 구역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합니다:
 - a. 재무제표 및 / 또는 연례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 b. 보세구역 설비시설, 투자, 종업원 수 및 제품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
5. 이전 PMK-147은 보세 구역 운영자가 보세 창고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PMK-131은 보세 구역 운영자의 위치에서 보세 창고 및 보세 물류 센터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추가 규정된다.

PMK-131은 2018년11월26일부터 발효된다.

Valuation 관련

재경부장관은 세관 심사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및 관세청으로부터 세관 가치의 결정 및 세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No. 134/PMK.04/2018의 규정을 새로운 규정으로 발행된다.

PMK-134의 중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평가 조연 신청을 처리 할 수 있다:
 - a. 세관 접근 플랫폼에 등록 된 수입자가 제출;
 - b. 하나의 물질에 대해 제출;
 - c. 제출 된 물질 자료가 이의 과정이나 심사청구 중이 아님;
 - d. 제출 된 물질은 관세 및 소비세에 속하지 않다;
 - e. 수입 물품은 세관 신고서에 제출되지 않다; 또한
 - f. 수입 될 물품은 수입자에 의한 무역 대상.
2. 평가 조연을 위한 신청서는 관세 및 소비세 본부("DJBC")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 될 수 있다.
3. 평가 조연 신청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a. 구매 주문서 ("PO"), 신용장 ("L/C"), 송장, 확인 메시지, 판매 계약서 또는 지불과 관련된 유사한 서류의 형태가 될 수 있는 문서; 또한
 - b. 제안 된 세관 가치의 물질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i. 판매 계약 (지원, 로열티, 상표, 면허, 저작권, 보증, 에이전트 / 브로커, 수익금)
 - ii. 보험 정책
 - iii. 명백한; 및/또는
 - iv. 세관 가치와 관련된 기타 모든 서류.
4. 평가 조연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발급 되어야 한다;
 - a. 공인 경제 운영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또는 세관 주요 파트너가 근무하는 30일; 또는
 - b.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다른 수입자를 위한 40일 근무일.
5. 평가 조연의 결과가 발표된 후 7일 이내에 수정 될 수 있다. 또한 평가 조연의 결과 개정 신청은 한 번만 제안 할 수 있으며 다음 기간 동안 추가 처리된다:
 - a. 수입 상품의 거래 가격에 추가, 축소 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나 비용의 동일한 구성 요소가 발송된다; 또한
 - b. 다른 평가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및/또는 문서가 있는 경우.
6. 평가 조연은 수입 시점의 거래 조건이 이전의 평가 조연과 일치하는 한 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 된다. 평가 조연 결과는 수입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첨부해야 된다.

PMK-134는 2018년11월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소포 수입에 관한 조항

재경부장관은 소포 수입 규정에 관한 재경부장관 규정 No. 182/PMK.04/2016을 개정하기 위해 규정 No. 112/PMK.04/2018을 발급되었다. 재경부장관은 소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입 물품의 양이 증가하고 수입자가 수입품의 관세 및/또는 관습 가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발표했다.

PMK-112가 개정한 PMK-182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PMK-112는 PMK-182와 비교하여 수입품에 대한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전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이전에 PMK-182는 화물 당 최대 FOB USD 100의 세관 액으로 소포가 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PMK-112는 수입 관세 면제가 물품 수급자 당 FOB USD75의 최대 세관 가치에 대해 부여된다는 규정을 개정되었다;
3. PMK-182에 따라 관세 및 소비세 공무원은 관세 가격이 FOBUSD100을 초과 할 경우 관세 가격 및 관습을 결정해야

하며 PMK-112 하의 관세 및 관습을 결정은 관세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선적시 FOB USD75를 초과하는 경우 수행 된다;

4. 이전에는 PMK-182에 따라 분리 된 형태의 소포에 최대 40개의 담배, 10개의 시가, 40 그램의 파쇄 된 담배 / 기타 담배 제품을 지닌 선적물 당 각각의 물품 수령자에 대한 수입 관세 및/또는 세금 면제가 부여 될 수 있다. PMK-112는 이 목록에 40 밀리리터의 기타 담배 제품을 추가된다.
5. PMK-112는 서면, 계산 및/또는 서면으로 실수가 있는 수입 관세, 소비세 및/또는 세금 납부 지연서(SPPBMCP)의 추가, 축소 또는 철회를 포함하여 SPPBMCP를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된다. SPPBMCP에 대한 수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행 할 수 있다:
 - a. 지정된 우편 서비스로 전달 된 배달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 b. 수입되지 않은 채무, 소비세 및/또는 세금이 지불되었다.

PMK-112는 2018년10월10일부터 발효되었다.

세관 신고

재경부장관은 가장 최근에 법령 No. 159/PMK.04/2017("PMK-159")에 의해 개정 된 재경부장관 규정 No.155/PMK.04/2008("PMK-155")을 개정하기 위해 규정 No. 104/PMK.04/2018(PMK-104")을 발급되었다.

PMK-104 주요 규정은 다음 과 같다:

1. 수입 신고서에서 수입자는 PMK-10에 규정 된 부착물 ("PMK-104에 부착")에 명시된대로 단위 또는 교단을 사용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수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수출 신고서에서 수출업자는 첨부 서류 B에 수출되는 물품의 수량에 관한 정보를 PMK-104에 첨부 된 단위 또는 교단을 기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세관 영토 안팎으로 외화의 형태로 현금을 운반하는자는 첨부물의 외화 부분을 PMK-104에 사용하여 외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PMK-104는 2018년9월3일에 발효되었다.

소비재 상품의 비축, 수입, 수출 및 운송 절차

관세 및 소비 국장은 비축, 수입, 수출, 및 운송 또는 소비세 대상 품목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 No. PER-02/BC/2015 ("PER-02")를 개정하기 위해 규정 No. PER-16/BC/2018("PER-16")을 발급했다.

다음은 PER-16의 주요 규정에 대한 요약된다:

1. 다음 회사에서 세관 및 소비세 대상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및 소비 세원의 직접 jatke에 관한 새로운 조항 (제7a조) 추가된다:
 - a. 저 위험 공장 기업가 또는 저장 장소 기업가; 또는
 - b. 공장이나 저장 장소로의 가연성 제품의 방출이 동일한 관세 및 소비세 관청의 감독 관할 내에 있는 한 중간 위험 공장 기업가 또는 저장 장소 기업가.
2. 제조자, 저장 기업가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세 물품 서류 (CK-5)의 보호하에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과세 대상 물품을 운송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조항 (제14a조) 추가 된다; 또한
3. 위의 변경 사항에 맞게 첨부 파일을 교체한다.

PER-16은 2018년 9월 일에 발효되었다.

수입자 식별 번호

무역부장관은 수입자 식별 번호 ("API")에 관한 2018년의 규정 75 ("MDAG-75")를 발행했다. MDAG-75는 전자 통합 사업 면허 또는 온라인 단일 제출("OSS")가 관련하여 2018년 정부 규정 No. 24 ("PP-24")에 대한 조정으로 무역부장관 규정 No. 70/M-DAG/PER/9/2015 ("MDAG-70")를 대체한다.

PP-24는 각 회사에 대한 사업자 식별 번호 ("NIB")를 생성하는 온라인 통합 사업 면허에 관한 서비스를 비준한다. 또한 MDAG-75는 NIB가 API로서도 기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특정 비즈니스 사업은 구체적으로 다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화 수입자는 일반 수입자 식별 번호 ("API-U")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에너지, 석유 및 가스 사업자 또는 계약자는 반드시 생산자 수입자 식별 번호 ("API-P") 대외 무역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MDAG-75의 규정에 대한 요약된다:

1. API가 회사의 본사에서만 개최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2. API 보유자가 발행일로부터 5년마다 발행 기관에 재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3. MDAG-70과 비교하여 MDAG-75는 다음과 같이 API 일시 중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한다:
 - a. 수입 실현에 대한 의무 보고를 수행하지 않다;
 - b. API 애플리케이션 문서에 잘못된 정보 나 데이터를 제출한다;
 - c. 수입 물품에 대한 확인을 지지 않다;
 - d. 수입 부문의 법률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한다; 또한
 - e. 수입과 관련된 문서 및 편지를 남용한다.
4. 이전에 MDAG-70에서 양이 정지 된 API는 수입업자가 의무를 수행하는 한 재 활성화 될 수 있지만 MDAG-75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API를 활성화 할 수 있다:
 - a. 수입업자는 의무를 이행한다; 및 /또는
 - b. 1년 동안 일시 중지된 API는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
5. 이전에 MDAG-70은 API 해지 날짜로부터 1년 또는 2년 후에 API가 해지 된 수입업자가 API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현재 수입 업체는 API 해지 일로부터 2년 후에 만 새로운 API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MDAG-75는 2018년 7월 20일 발효되었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Business Tax and Corporate License	mehimawan@deloitte.com
Balim	Transfer Pricing	bbalim@deloitte.com
Cindy Sukiman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Heru Supriyanto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Business Tax	jlauwrenz@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Transfer Pricing	rkiantiong@deloitte.com
Roy Sidharta Tedja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oytedja@deloitte.com
Turmanto	Business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turmanto@deloitte.com
Yan Hardyana	Business Tax	yhardyana@deloitte.com
Yoon Young Jun	Transfer Pricing	yoonyoungjun@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approximately 340 partners and 8,8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and their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publication.